

## 『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하고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
-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(전액, 일부)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토요일 오전 시설 사용시에도 기본사용료 가산금 부과 및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(안 제5조제3항)
-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(전액, 일부)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7조)
  - 시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  -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  -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  -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
- 개정된 법률제명 적용(안 제13조제2항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조례안은

-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하고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

##### 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문화예술회관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변경하고,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.

##### ○ 검토결과

##### ▪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 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진 표준 금액외에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
-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하고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